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에 구축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 마.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규정(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시,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강릉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